

글로벌리더십센터(SGLC) 운영규정

제정 2012. 3. 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학칙 제72조에 의거 설립된 글로벌리더십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직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글로벌리더십 교육 및 활동에 관한 발전계획의 수립
2. 리더십역량강화, 글로벌역량강화, 사회봉사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개발
3. 리더십역량강화, 글로벌역량강화, 사회봉사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
4. 글로벌리더십 교육 및 활동과 관련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
6. 기타 글로벌리더십 교육 및 활동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 및 역할

제3조(조직) 센터에는 글로벌리더십센터장(이하 ‘센터장’이라 한다), 프로그램 디렉터(이하 ‘PD’라 한다) 그리고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의 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서 보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제2조 센터의 직무를 통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.

제5조(영역별 PD)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PD를 둘 수 있다.

1. 글로벌역량 PD : 글로벌 교육 및 활동 영역의 운영
2. 리더십 PD : 리더십 교육 및 활동 영역의 운영
3. 봉사실천 PD : 교내외 봉사실천 영역의 운영

② 영역별 PD는 본교의 교원 및 외래교수 또는 교직원으로 센터장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위촉한다.

③ PD는 센터장을 보좌하여 담당 영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행정지원팀) ① 센터의 행정을 지원 및 관리할 행정지원팀을 둔다.

② 행정지원팀의 구성, 직원 배치, 업무분장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행정지원팀은 센터장의 통솔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며, PD의 업무를 지원한다.

제3장 글로벌리더십센터 운영위원회

제7조(구성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글로벌리더십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, 영역별 PD 그리고 교수 및 교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제8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9조(간사위원) ① 간사위원은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②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.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내규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
3. 센터와 관련한 연구 개발 및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

제11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구성, 역할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5장 기타

제13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총당한다.

1. 센터 운영을 위하여 본교에서 배정된 금액
2. 기타 보조금 등

제14조(회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5조(규정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6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